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5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9)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2)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1)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3)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2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9) 2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2) 2
-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1) 2
-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3) 2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2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기관장 출석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부위원장님이 대신하여서 참석하는 것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유동수 법률안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9)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2)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1)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3)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이것 때리고.

김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지난주에 로텐더홀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총리실 과장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정과 색이 뚜렷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총리실 주요 간부 방이라고 불리는 어떤 채팅방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도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공직기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다음 전체 회의 때 그 총리실 과정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제가 손을 드니까 위원장님이 놀라는 얼굴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유동수 깜짝 놀랐습니다.

○송언석 위원 오늘 보니까 7건이 형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설치법 32조의2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호를 나눠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호에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그 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2호에……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그다음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 중인 경우 이렇게 좀 나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소청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소청은 지청까지 포함한다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해당 사건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 이렇게 해서 2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위원장 유동수 분류해서?

○송언석 위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빠져 있는지, 공수처가 왜 빠져 있는지 같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32조의2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했으니까 아마도 ‘등’에 그냥 포함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추측건대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 때 이 조항을 손을 보지 않았던 입법 미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굳이 넣는다면 지금 금감원장, 부원장, 아마도 감사까지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대상인 것 같은데 여기다 열거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90조 3항과 관련해서는 단서조항에 124조부터 127조까지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기소와 관련되어서 협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인지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관을 2개로 굳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뉘던 그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협의는……

○위원장 유동수 좀 더 드릴게요. 2분 더 드릴게요.

말씀하시지요.

○송언석 위원 감사합니다.

협의는 검찰총장과 하면서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검찰총장이 일견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장보다는 상위의 기관인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기소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벌칙 규정하는 것하고 기소하는 것하고 이미 지나간 단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서규정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중수청 또는 국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든지 그것이 혹여 기소와 관련된 사항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수청장, 국수본부장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기관 간의 동등한 그런 입법체계에 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장이 협의하고 국수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공정거래법 단서조항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존의 현행 법률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화번호를 확인할 때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이 행위는 아마도 수사와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미 수사가 끝난 것을 가져와서 기소단계에서 검찰총장은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총장은 당연히 여기에서 삭제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장,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령상 검찰총장을 여기에 계속 법률에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기관의 장은……

○이강일 위원 더 주세요.

○위원장 유동수 시간 더 드리세요.

○송언석 위원 시간 자꾸 주세요, 조금만 더.

○위원장 유동수 계속하세요.

○송언석 위원 검찰총장은 지금은 그냥 직급 또는 직위의 개념에서 그 개인에 대한 지칭으로만 사실 남아 있는 거고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본다면 이러한 법조문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기재가 되고 입법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나누었던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바뀌는 법체계에 좀 정합성은 가지도록 관련 법률을 손대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분 드리십시오.

○김형연 위원 조국혁신당 김형연입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수사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방문판매업법이랑 공정거래법의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총장과 동의의결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했다는 것은 일단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동의의결을 할 때 수사기관장이 아니라 공소청의 장의 누가 협의를…… 일단 첫 번째,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로 충분하지, 동의의결하는데……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서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 의견과 다르게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관한한은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의 상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소한 문제인데요. 그것도 금방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소청법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무슨 잘못된 용어를 썼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용어이나.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공소청의 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냥 검찰총장이라는 직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중수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했듯이 비록 공소청의 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지만 이러한 부수법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용어 선택이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지만 공소청에다가 헌법상의 검찰총장과 공소청의 장을 연결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해도 전혀 위헌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최초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의 장의 이름이 검찰총장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형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 정합성에, 또 지금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 후에 여러 가지 형소법 부속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들을 경청하고 오늘 의결 후에 어차피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의견들을 잘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로 의견을 전달을, 지금 말씀하신 송언석 위원님, 김형연 위원님 잘 정론하고 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수 먼저 서일준 간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아, 먼저 해요.

○위원장 유동수 아니요, 신동욱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법사위에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김형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검찰총장의 이름을 남겨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런 세부적인, 상임위로 갔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 절대로 그냥 갈 수 없다는 논쟁이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있었고 사실은 검찰을 없애겠다는 대전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위법을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다만 이미 검찰을 없애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상임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법안이라도

그러면 현장에서 벌어질 어떤 혼선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소위로 다시 보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토론의 필요가 있는 것이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정무위 야당 간사 서일준 위원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정무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수많은 후속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김형연 위원님의 의견처럼 충분한 검토도 없이 후속 법안까지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졸속입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후속 법안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만든 제도를 또 다른 졸속심사로 땀질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과 같은 졸속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시지요,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먼저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유동수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민병덕 위원입니다.

저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이렇게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저희 정무위에서 이런 의견입니다’를 부대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전체회의에서 자구를 바꿔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명확히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법안소위로 가면 10월 2일에 못 맞출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두 가지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법사위라는 또 하나의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체계·자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체계·자구에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으로 법사위에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민병덕 위원 혹시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정위 부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민병덕 위원 기소 후에도 동의의결이 가능한가요? 동의의결제도가 지금 조사·심의 중인,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피심인이 스스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피해 회복도 하고 이러겠다는 것을 가지고 빨리 동의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그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사가 기소 동안에도 가능한지, 수사 동안에만 가능한지 기소 동안에도 가능한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기소 동안에도 가능하다면 여기에 공소청의 장이든……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보다는 그 의견이 좋은 것 같은데, ‘공소청의 장의 의견’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금 현재 기소가 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상황일 경우는 저희가 고발한…… 공정위가 고발한 거기 때문에……

○**민병덕 위원** 고발하고 나서는 동의의결 안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동의의결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동의의결제도의 특성상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국수본 본부장이라든지 중수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기소 후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런데 동의의결 절차로 가면 어쨌든 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서 형사제재가 일단은 안 되게 되는 거니까 기소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불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병덕 위원** 아니, 기소 전에 판단을 하는데 왜 그게 필요해요? 판단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견을 들어야 될 곳이 있으면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 단계별로, 이게 중수청 단계에 있으면 중수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국수본 단계에 있으면 국수본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공소청 단계에 있으면 공소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단계에 있을 때도 동의의결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사실은 동의의결 절차가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게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제재가 일단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 오히려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공소기관도 포함하는 게 아주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민병덕 위원** 어쨌든 제 주장은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동의를 대부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무위에서 이 동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법사위에 같이 올리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입법취지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근본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검찰로부터 구속되거나 압박받는 걸 근본적으로 해제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 법안들을 지금 후속적으로 논의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가 아주 정당하고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체계·자구의 논의는 아마 우리 국회의 기능상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과 정합성을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10월 2일, 역사적인 중수청 출범과 완벽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모두 함께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완비해야 될 때라는 점에서요, 오늘은 여기서 이 법안을 의결하고 또 필요한 의견들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법사위에서 정합성 있게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사위의 동료 위원님들이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잘 발휘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헤량해 주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지금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라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의결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김형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의 의견들을 담아서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급성 때문에 오늘은 이 법안 의결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연 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연 위원님.

○김형연 위원 김형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법이 지금 본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을 내서 법사위에 올리는 방안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지금 10월 2일이 목전에 있으니 정무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다는 조건으로 빨리 그 시한에 맞춰서 법사위에서 직접 일괄해서 해결하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 처리 시한, 시급성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을 시정하는 것을 정무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게 하는 데 동의한 데는 그 시급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무위 소관 법률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소성법 체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뀐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해서도 비슷한 실수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위원장 유동수 맞습니다.

○김형연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법사위밖에 없으니 차라리 법사위에 빨리 올려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 생활의 혼란을 덜어 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강일 위원 표현 정확히 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손명수 위원 동의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이강일 위원 정무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

○위원장 유동수 오늘 법률안심사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만,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체계 정비 법안으로서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등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형연 위원님 또 송언석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위원장 이름으로 법사위원장에게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먼저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0분)

○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 예정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법률안과 병합심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준현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김형연 민병덕 박대출 박상혁 박성훈 박준태
박홍배 서일준 손명수 송언석 신동욱 유동수 이강일 전현희 조정훈 최은석
한민수 한창민

○청가 위원(2인)

박민규 이소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심판관리관 박세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임시회의록